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울산광역시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해양수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표1]과 같이 최근 2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총 99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9,991백만원(연 평균 4,995백만원)을 교부받아 시본청 및 해당 구·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해양수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1] 최근 2년간 울산광역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건수	주요사업내용	국고보조금액
합 계	99건		9,991,000
2015년	41건	수산물 위생관리 등	3,417,000
2016년	49건	수산물 위생관리 등	6,574,000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7)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사업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산정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표2]와 같이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사업의 일부포기 또는 시행완료한 4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4,489천원과 보조금 발생이자 365천원을 합하여 총 34,854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표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 반납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기관명	사업명	예산/집행 현황		국고보조금 미 반납액		
			예산액	집행액	계	집행잔액	이자
합 계			90,000	55,511	34,854	34,489	365
2016	울산시	연근해어선감척 (연안어업실태조사)	40,000	32,976	7,052	7,024	28
		수산물위생관리 (기생충구제)	10,000	9,500	552	500	52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10,000	9,960	86	40	46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30,000	3,075	27,164	26,925	239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시정]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일부 포기 또는 완료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반납조치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